

## 법무매거진



# 대법원 ‘증거 남기려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야’



〈대법원 전경〉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두 차례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조선일보)